

 금융감독원	보 도 자 료	 kakaomobility
 손해보험협회 <small>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of Korea</small>		티맵 모빌리티

보도	2026.4.28.(화) 조간	배포	2026.4.27.(월)	
담당부서	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특별조사팀	책임자	팀 장	장현국 (02-3145-8880)
		담당자	수 석	황인욱 (02-3145-8715)
	손해보험협회 보험사기조사부	책임자	본부장	신종혁 (02-3702-8526)
		담당자	팀 장	강아현 (02-3702-8650)
	티맵모빌리티 대외정책팀	책임자	팀 장	박성제 (010-2967-3311)
		담당자	매니저	김하은 (010-5286-7262)
	카카오모빌리티 PR팀	책임자	부 장	이지혜 (010-4334-9098)
		담당자	매니저	김예림 (010-9141-0988)

**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다발지역 음성안내 서비스,
4월 전국 100개 지역 · 3개 내비게이션 앱으로 확대합니다.**
- 현대자동차 · 기아차 내장형 내비게이션으로 확대 ('26년 중) -

〈 주요 내용 〉

- ◆ **(추진 배경)**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사전예방을 위한 대국민 집중 홍보의 일환으로, 고의사고 다발 지역을 선정하여 내비게이션 앱(App)으로 음성안내하는 방안을 도입하였음 ('25.7월)
 - 이후 고의사고 예방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서비스 범위를 확대 시행 ('26.4월)
- ◆ **(주요내용)** ① 고의사고 지역 추가, ② 내비게이션 앱 추가 및 ③ 안내서비스 고도화(빈발 사고유형 팝업) 등 서비스 범위 확대
 - **(지역확대)** 고의사고 다발지역을 기존 35개에서 100개로 확대하여 선정
 - **(연계 앱 확대)** 기존 티맵, 카카오내비 외에 네이버지도(길찾기) 추가
 - **(서비스 고도화)** ① 고의사고 지역 진입 150m 전부터 음성안내를 시작, ② 빈발하는 사고유형 세분화 및 팝업 안내 추가
- ◆ **(내장형 내비 확대)** 현대자동차·기아차와 협력하여 별도 앱 설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장형 내비게이션에도 도입 예정 ('26년 중)
- ◆ **(시행시기)** '26.4월 중 시행 (네이버지도는 4.1.부터 시행중)
 - ※ 서비스 범위 및 시행 시기는 각 앱 업체별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I. 서비스 확대 주요 내용

- 주요 내비게이션 앱 3사와 협력하여 ①대상 지역 확대, ②연계 앱 추가, ③안내 방법 고도화 등 고의사고 안내 서비스를 확대 시행
- 또한, 국산차 내장형 내비게이션에도 서비스를 확대·도입하여 별도 앱 설치 및 구동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

□ **(대상 지역 확대)** 고의사고 다발지역을 기존 35개 지역에서 전국 100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음성안내를 실시합니다.

- 최근 3년간 고의사고 적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국적으로 고의사고 빈도가 높은 지역 100곳을 선정하여 앱에 반영하였습니다.

□ **(연계 앱 추가)** 기존 티맵(TMAP)·카카오내비에 더해 네이버지도(길찾기) 이용자에게도 고의사고 음성안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.

- 국내 최다 이용 3개 내비게이션 앱을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이용 운전자 대다수에게 고의사고 예방 안내가 제공됩니다.

□ **(안내 방법 고도화)** 내비게이션 이용자가 고의사고 발생 가능성 및 사고 유형을 보다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음성안내 서비스의 기능을 고도화하였습니다.

- 사고다발 지역 진입 직전(15m)에 안내하던 방식을 진입 150m 전부터 선제적으로 안내하여 운전자의 사전 대처 시간을 확보하였으며,
- 빈발하는 사고유형(예 : 진로변경, 좌회전 고의사고 등)을 세분화하고 이를 팝업 안내 기능으로 시각화하여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였습니다.

①사고다발지역 접근(150m)	②사고유형 팝업(예시)	③유의문구 음성안내(예시)
		 <p>“고의사고 다발구간입니다. (가)진로변경/(나)좌회전시 고의사고에 유의하세요”</p>

- **(내장형 내비 확대)** 국내 완성차 업체인 현대자동차·기아차와 협력하여 차량 내장형 내비게이션에도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. (26년 중)
 - 내장형 내비게이션은 차량 출고 시부터 자동 적용되어 앱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
 - 특히, 스마트폰 조작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 운전자 등 디지털 취약 계층도 별도 조치 없이*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.
 - * 신규 등록 차량 외 기존 차량은 별도의 지도 업데이트 절차 필요
- ※ 일부 수입차의 경우 티맵 등 국내 내비게이션 앱을 기본 탑재하여 출고되고 있으나, 지도 업데이트 시행 여부는 수입차 업체별로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

II. 고의사고 대응요령

① 고의사고 음성안내 구간에서는 더욱 주의하며 방어운전을 생활화하세요.

- (진로변경 시) 무리하게 끼어들지 말고 후행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로를 변경하며, 후행차량이 갑자기 가속하는 상황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.
- (교차로 통행 시) 비보호좌회전 및 맞은편 차량이 직진 중인 경우에는 반드시 양보 후 주행하는 등 통행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
- 음성안내 구간이 아니더라도 신호위반·불법유턴·안전거리 미확보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은 고의사고의 표적이 되기 쉬우므로, 교통법규 준수 및 방어운전을 항상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.

②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고 현장 합의에 유의하세요.

- 경찰신고를 적극 회피하거나 강압적으로 사고 경위를 왜곡하는 경우, 사고 처리 후 동승자·운전자가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고의사고를 의심하세요.
- 고의사고가 의심 되면 경찰·보험회사에 즉시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한편, 사고 처리 후에도 금융감독원·보험회사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③ 사고발생시 입증자료를 반드시 확보하세요.

- (블랙박스 원본 영상) 보험사기의 고의성 분석에 가장 중요한 자료로, ① 블랙박스 전원 상태, ② 상대차량이 촬영되는 위치에 설치 여부, ③ 영상 즉시 추출 가능 여부 등 사용법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.
- (사고 현장 사진) 차량 파손 부위, 사고 위치, 도로 상황 등을 다각도로 촬영해 두시기 바랍니다.
- (목격자 진술 및 연락처) 가능한 경우 목격자를 확보하고, 상대방 탑승자 수를 반드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.

④ 고의사고 유인·알선 행위는 중대범죄임을 기억하세요.

- '고액단기알바', 'ㄱㄱ수비(공격수비)' 등의 표현으로 보험사기를 권유받는 경우 단호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.
- 보험사기 유인·알선 행위는 「보험사기방지특별법」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입니다.
- 텔레그램 등 SNS에서 보험사기 유인·알선 행위를 발견하거나 권유를 받는 경우, 게시글이나 대화 내용 캡처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III.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

- 금융감독원은 고의사고 음성안내 대상 지역을 주기적으로 갱신함으로써 최신 고의사고 적발 현황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적합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.
- 특히, 이번 국산차 내장형 내비게이션 연계 추진으로 스마트폰 앱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까지 보호 범위가 확대되어 고의사고 예방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이를 통해 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, 선량한 국민들의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.

□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고의사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지속 강화하고,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인 보험사기에 강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.

○ 아울러,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가 보험사기 적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만큼, 고의사고 의심 사례를 접하신 경우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특히, 현재 보험사기 「특별 신고·포상 기간」이 자동차보험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.

「특별 신고·포상 기간」 운영 (연장·확대)

- ① **신고기간** '26.1.12.(月) ~ **10.31.(土)**
- ② **신고대상** 전국 실손 및 **자동차** 보험사기 의심 병·의원(한의원, 한방병원 포함), 의사, **자동차 정비업체(덴트포함) 및 렌터카 업체 관계자, 자동차 고의사고 운전자, 브로커(설계사) 등**
- ③ **포상금액 및 지급대상** 5천만원(신고인이 병·의원 관계자인 경우), 3천만원(신고인이 병·의원 제보 브로커, **자동차 정비업체<덴트포함> 및 렌터카업체 관계자**인 경우), 1천만원(신고인이 환자 등 병원 이용자 및 **차주운전자·동승자** 등 기타 일반인인 경우)

[보험사기(알선·유인·권유·광고행위 포함) 신고방법]

- ▶ (유선 상담·신고) ☎1332 - 4번(금융범죄) - 4번(보험사기)
 - ▶ (인터넷 접수)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상단 『민원·신고』 → 『불법금융신고센터-보험사기신고』
 - ▶ (우편 접수)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
- ※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내 『보험사기 신고센터』도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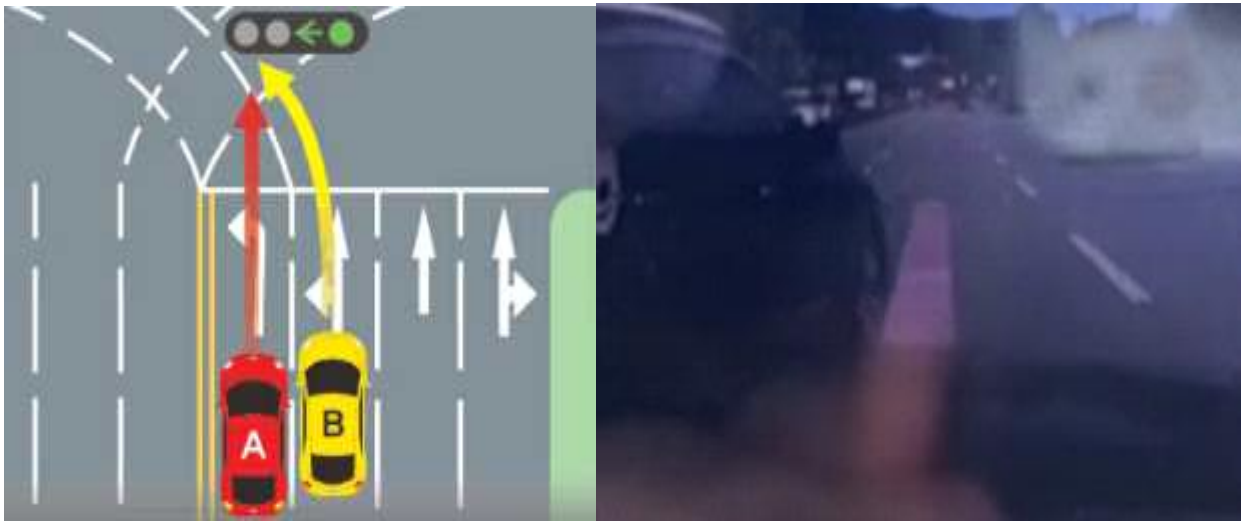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구분	티맵	카카오내비	네이버지도
<p>고의 사고 예방 안내 화면</p>			
<p>음성 안내</p>	<p>사고다발지역 음성안내 시점(150m 전)에 사고 이미지 팝업 후, → (음성안내 송출) “고의사고 다발구간입니다. ^(가)진로변경^(나)좌회전시 고의사고에 유의하세요” ※ 각 앱 업체별로 음성안내 문구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.</p>		

(예시) 사고다발 장소 고의사고 사례

◆ (1·2차로 좌회전) 2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**혐의차량(B)**의 진로에 차선을 위반한 1차로의 좌회전 **차량(A)**이 거리를 좁힌 상태에서 차선을 위반하여 직진으로 **침범하자 감속·회피 없이 접촉**

● 특히 **혐의차량(B)**은 비슷한 속도로 좌회전 **차량(A)**에 붙여서 좌회전시 운전자(A)가 **사각에 있는 혐의차량과 차선침범 확인이 어려움**을 악용



◆ (회전교차로) 좌회전 우선순위가 있는 **혐의차량(A)**이 통행방법을 위반하는 **진입차량(B)**을 발견하고 양보 없이 **접촉**

● 특히 **혐의차량(A)**은 충분히 거리를 두지 않고 **진입하는 차량(B)**이 회전 구간으로 들어오면서 야간에 **전방시야가 제한되는 점**을 악용

